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 14(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7. 2.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4. 7. 2.

라. 상정일자 : 2014. 7. 10(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제정근거

- 「학교체육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 다.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안 제2조)
-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3조)
  -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 학교운동부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지명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당연직 의원(평생교육체육과장)
-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주요 내용

- 안 제1조, 제2조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3조에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등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의무,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특정한 안전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해당 안전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를 보면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관간 상호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의 조항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는 바, 관련 자료를 미첨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학교체육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건강증진 및 학력향상에도 기여하시기 바람

(답변) 노력하겠습니다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오,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나. 반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3. 타· 시도 비교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p> <p><input type="checkbox"/>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p>
------	-----------------------------------------------------------------------------------------------------------------------------------------------------------------------------------------------------------------------

## ■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붙임 3> 타시·도 비교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30. 제정)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과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강원도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고, 부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원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30. 제정)	강원도 학 (
<p>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p> <p>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3.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만, 위원의 사임 기는 전임위원</p> <p>② 제3조제2호 재직하는 동안</p>
<p>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②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부</p>
<p>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p> <p>②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li> <li>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ol>	<p>제6조(회의) ①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정기회의는 상반</p> <p>③ 위원장은 유가 있을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3분</li> <li>2. 교육감의</li> <li>3. 그 밖에</li> </ol> <p>④ 위원회의 의하고, 출석위원</p> <p>⑤ 간사는 회의 원에게 통보하여</p>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30. 제정)	강원도 학 ( )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지 아니하다.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ol>	제7조(위원의 위 관하여는 「학교
<p>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li> </ol> <p>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제8조(위원의 위 어느 하나에 해 해당 위원의 위 1. 심신장애로 2. 직무태만, 적합하지 아니하 3. 제7조의 제척
제9조(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지역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지역교육 학교체육진흥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30. 제정)	강원도 학 (
<p>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p> <p>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은 지역교육청</p>
<p>제10조(수당 등)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0조(분과위원 행하기 위하여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항은 위원회의</p>
<p>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li> <li>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ol>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11조(의견청취)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과 관계 전 비 등 필요한 경</p>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2. 30. 제정)	강원도 학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운영 등에 관하
제13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 제4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4>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 6급	(성명) 김 현 정
입안주무부서	평생교육체육과	통보(조치)일	2014.03.0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관련 조문 없음	○개선권고	<p>■ (위원의 의무) 관련 조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등의 위원 윤리규범에 관한 의무 조항 신설</li> <li>- 위원들에 대해 ‘청렴 서약서’ 징구 등 권고</li> </ul> <p>■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조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조항을 명시 권고</li> </ul>	

<붙임 5>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4A인천교육002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명	박애희 장학사	전화번호 032--420-8141
분석평가서 제출 날짜	2014년 2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평생교육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안 제2조)</li> <li>○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3조)</li> <li>○ 위원회의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지명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li> <li>○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li> </ul>		
종합 검토 의견 (학교생활안전지원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2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모 태 상 (담당자/연락번호 : 최 은 미/032-420-8268)</p> <p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체육과장 귀하</p>			